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638
----------	------

2026. 4. 23.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4. 6. 최기찬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6. 4. 7.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2026. 4. 23.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최기찬 의원)

1. 주문

- 서울시의회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며, 입지 기준 및 환경·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거지역 인근까지 건립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

지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고, 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입지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행정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업 지연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와 같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 적정성, 환경 영향,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단계에서의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입지 기준 및 환경·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 이 건의안은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 경우 주민 반발과 행정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심의기준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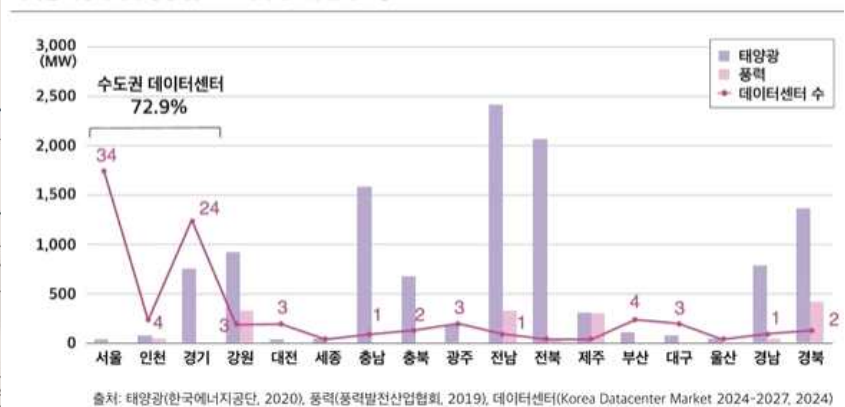
가. 데이터센터 설치 현황 및 민원발생 실태

-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산업 성장, 빅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데이터센터 신규 건립이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도권에 72.9%의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최근 서울 도심 주거지 인근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역갈등이 증가하고 있음.¹⁾



[수도권 데이터센터 갈등 사례]
출처: 동아일보(2026.4.9.)기사

지역별 재생에너지 용량 및 민간 데이터센터 입지 현황



[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 편중]
출처: ESG경제(2026.3.31.) “주택가 데이터센터 갈등 확산”기사

- 주요 민원사유로는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발열과 냉각설비 운영 과정에서의 소음, 화재위험, 전자파 등이 있는데, 이 중 발열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가 인근 지역에 도시열섬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²⁾가 있으며, 소음과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 운영 특성상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³⁾된다는 특성이 있어 소음영향성평가

1) 동아일보(2026.4.9.) “데이터센터, 우리 동네엔 안돼”.. 수도권, 민원폭탄-소송갈등

2) 조선일보(2026.3.30.) AI 돌리는 데이터센터가 땅 달군다...온도 최대 9도 상승 기사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열이 주변 공기와 지면에 축적되면서 온도를 끌어올리는 ‘데이터센터 열섬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함.

3) 한국설비기술협회지(2022.11.)데이터센터의 소음영향성평가 및 대책방안에 따르면,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의 운영 특성상 기준이 가장 낮은 밤 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최근 소음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최악의 조건인 비상시를 가정하여 발생시의 모든 설비(비상발전기 포함)가 가동하는 조건에서의 소음 영향성 평가를 요구하는 추세”임.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⁴⁾만으로 주민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나. 건축법상 운용의 한계

- 현행 「건축법」 제11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는 포함되지 않음.

제11조(건축허가)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데이터센터는 2018년 9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⁵⁾을 통해 ‘방송통신시설’ 내 세부 용도로 명문화되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 등 대부분의 용도지역 내

4) 금천구 독산동 724-4 데이터센터 시뮬레이션 설명자료에 따르면, 밤시간대,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45dB을 평가기준으로 하였을 때, 인접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 예측결과가 36~43dB로 나타남.

5) 2018. 9. 4., 일부개정, 2019. 3. 5 시행, (대통령령 제29136호)

입지가 허용되고 있음⁶⁾.

- 다만, 이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법상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가 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사전 갈등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 현황]

구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1종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준공업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규정 방식	설치할 수 있는(Positive)					설치할 수 없는(Negative) *					할수있는(Positive)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X	규정X	조례위임			규정X	규정X	규정X	규정X	위임	규정X	X	규정O	규정O	
도시계획조례	-	-	규정X	규정O	규정O	-	-	-	-	규정X	-	-	-	-	
건축가능여부	불가	불가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	가능	가능	

*용도규정이 Negative방식인 경우, 데이터센터는 별도 규정이 없어 건축이 가능함

- 이러한 이유로 공사 지연을 목적으로 한 민원 또는 건축허가 이후 지자체의 착공신고 반려⁷⁾ 처분 등이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참고로, 지자체 착공신고 반려와 관련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요구자료 외에 다른 실체상의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례인 바, 반려 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판결하였음.⁸⁾ 이는 데이터센터가 건축허가를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재량적인 판단을 통해 허가를 결정할 수 없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6) 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외 모든 용도지역에 입지 가능

7)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김포시 구래동 데이터센터

8) 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438호)에 따른 금천구청 제출자료 참고

- 이처럼 현행 제도는 데이터센터의 건축허가 단계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이후에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지역주민들은 소음·발열 등에 대한 생활환경 침해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사업자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추가사업비 등이 발생하는 등 주민과 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즉, 데이터센터는 건설과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및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도심 내 주거지 인근에 입지할 경우 일반 시민들에 대한 주거권 침해의 우려도 감안하여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데이터센터는 거대한 ‘창문 없는 상자’ 형태로 건립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천구 가산동 데이터센터 전경]
출처: 뉴스1(2025.11.6.)기사⁹⁾



[영등포구 양평동 데이터센터 전경]
출처: ADIK 홈페이지¹⁰⁾

9) 뉴스1(2025.11.6.), “KT클라우드, 리퀴드 쿨링 적용 ‘가산 AI 데이터센터’ 개소”

10) ADIK 홈페이지, “액티스, 서울 양평동에 26MW급 도심형 데이터센터 준공”(검색일:2026.4.12.)

- 결론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시민들에 대한 공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입지, 특히 주거지역 및 주거·산업이 혼재된 지역(준공업지역¹¹⁾) 내에 건립될 경우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 건의는 타당하다 사료됨.
- 참고로, 최근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데이터센터를 ‘신산업건축물’ 등으로 별도 분류하여 주거지역 내 건립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¹²⁾

다. 정부의 표준 심의기준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¹³⁾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1% 수준으로 나타났음.¹⁴⁾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저주파 소음과 냉각 팬에 의한 열돔 현상에 대한 정밀 조사는 여전히 미흡함.
- 특히,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설비의 소음¹⁵⁾과 열돔 현상 우려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와 직선거리 100m 내외에 위치해 착공 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황인

11)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서울공업지역기본계획 보고서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산업단지’, ‘주거산업혼재지’, ‘주거기능밀집지’로 구분함.

12) 건축사뉴스(2024.8.21.), “고양시, 건축법 용도에 ‘신산업건축물’, 세부용도에 ‘데이터센터’ 신설 요청.. 주거지역 내 건립 불가 건의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5.9.21.)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14) 이에 더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경기지역의 데이터센터에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해 왔으며, 향후 전자파 갈등 발생 지역에 설치를 확대할 계획임.

15) 한국설비기술협회지(2022.11.) ‘데이터센터의 소음영향성평가 및 대책방안’에 따르면,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의 운영 특성상 기준이 가장 낮은 밤 시간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최근 소음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최악의 조건인 비상시를 가정하여 발생시의 모든 설비(비상발전기 포함)가 가동하는 조건에서의 소음영향성평가를 요구하는 추세”임.

데,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¹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계층에게 소음과 열발생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재량권의 근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격거리 및 소음·열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데이터센터 심의기준 마련을 통하여, 지자체장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규모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시설¹⁷⁾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등 의견청취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예상되는 갈등 및 분쟁을 사전에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조성 관련 법령 제정 발의안(검토보고서 붙임2)에서도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부재하였던 주민 의견수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음.

※관련 법령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 법안 제정 배경

- (수요급증) AI 고도화로 고사양 데이터센터 수요는 급증
- (주민 갈등)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할 법적 근거 미비
- (국가 전략자산화) 데이터센터 핵심 국가 인프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진흥

2. 주요 내용

- (실태조사) 전력사용량, 안전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 (건축·운영·관리)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구조,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보안, 재난 예방 및 복구 등 별도 기술 고시
- (사회적 합의 및 안전) 주민 의견수렴 기준을 마련(주변 지역 주민에게 의견수렴 구역, 주제, 시기 및 사유 포함), 전자파 영향 측정 등 안전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등

16) 핸드메이커(2026.3.18.), ““법적 기준 만족”...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공사, 잠시 ‘주춤’..현장 가림막 너머 굳은 타워크레인 전자파·소음 공포에 파행된 설명회 법적 기준 ‘만족’ vs 주민 입장은 ‘불안’ 중부일보(2026.2.8.) “미추홀구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장기화... 주민설명회 ‘또 파행’”

17) 현행법상 소규모 데이터센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 고지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라. 정부의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수도권 집중 완화 및 안전 기준 관련)

-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있으나, AI 산업 특성상 초저지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입지 수요가 지속 증가 중이기 때문에, 도심 내 개별 입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¹⁸⁾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단 내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 중인 반면, 도심 내 ‘개별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재함. 특히, ‘25.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ESS(에너지저장장치)실의 화재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거 밀집지 인근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방법 적용 및 정부 차원의 안전을 고려한 입지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일 것임.
- 따라서, 데이터센터의 무분별한 도심 진입을 방지하고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데이터센터 입지 및 건립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종합의견

- 데이터센터는 AI시대의 디지털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기반시설이나, 시민의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는 주거 공간 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한 계층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앞서 설명한 심의기준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무

1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12.12.)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중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서면자료 6p.

분별한 데이터센터 확산을 차단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거대 건축물의 위압감을 완화하는 등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기여방안(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명확한 심의기준과 주민참여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 소모를 방지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추가적으로, 용도지역별 건축물 입지를 규정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한 규제도 가능한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최기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38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4월 06일
발 의 자: 최기찬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동욱, 박철성,
봉양순, 아이수루, 왕정순,
, 이민옥, 이영실, 이원형,
정준호 의원(10명)

1. 주문

- 서울시의회는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며, 입지 기준 및 환경·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거지역 인근까지 건립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고, 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입지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행정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업 지연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와 같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 적정성, 환경 영향,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단계에서의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입지 기준 및 환경·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 발열, 소음,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건립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시행령」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준공업지역 내에서는 건축이 가능한 일반 시설로 취급되고 있으며, 별도의 환경영향평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전적인 입지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이다.

이로 인해 실제 사례에서도 주거지와 불과 수 미터 거리 내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는 등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한 데이터센터 건립이라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주민 반발과 행정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

의 데이터센터 사업이 주민 반대로 인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와 같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 계획 실현을 위하여,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개정하여,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에 한정)를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데이터센터와 같이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입지 적정성, 환경 영향,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무분별하게 건립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입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